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20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7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7년 12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가. 제안이유

-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과제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법에 따르면 협의회는 주민으로 구성되고,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 평창군수의 인가를 받아 성립하게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없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에 합치하도록 이를 정비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삭제>

- 규정 삭제에 따른 조 제목 변경(안 제2조)
 - (당초) 설치 ⇒ (변경) 구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 하지 않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설치)”를“(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